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검토 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4. 2. 13.
-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2. 제정사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정책의 조기정착과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내용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정함(조례안 제2조)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정함(조례안 제7조)
-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며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루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함 (조례안 제8조)
-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함(조례안 제9조)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자동판매기 커피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
 - 대형쇼핑센터·시장·대규모점포 등에서 A4규격 또는 1,000cm²이하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
 - 매장면적이 33m²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함(조례안 제10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과 신고자가 익명,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함(조례안 제15조)

4.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4.1.1.부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신고포상금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을 지급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5만원을 지급하고
-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회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시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하고 1인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규정하여 신고행위를 주 수입원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서울시, 2003. 9.18.)과 서울시 표준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2004년도의 예산으로 3,000천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3. 2.
 보고자 : 박창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 검토 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